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
2024. 2. 20(화) 10:00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463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
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관련근거

가.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
나.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나.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

설치된 고향사랑 기금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 위한 사업 추진

고향사랑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·운용

5.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가. 변경사유 : 2023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기금 조성 예상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전입금 증액분 반영

나.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	2023년도말 조성액 ⓐ	2024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4년도말 조성액 ⓓ=ⓐ+ⓑ-ⓒ	증 감 ⓔ=ⓓ-ⓐ	비고
			수입ⓑ	지출ⓒ			
고향사랑 기 금	변경전	0	31,990	0	31,990	31,990	자 치 행 정 과
	변경후		105,015	0	105,015	105,015	

다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4년도 말 조성액ⓐ	융자금 미회수 채권ⓑ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ⓒ	총 조성규모 ⓓ=ⓐ+ⓑ-ⓒ
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	105,015	0	0	105,015

라. 자금수지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
항 목	경 정 액	기 정 액	증 감	항 목	경 정 액	기 정 액	증 감
합 계	**105,015**	**31,990**	**73,025**	**합 계**	**105,015**	**31,990**	**73,025**
전 입 금	49,242	15,000	34,242	예 치 금	105,015	31,990	73,025
이 자 수 입	2,691	820	1,871				
기부금수입	53,082	16,170	36,912				

○ 수입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기 존	변경(안)	비 고
'23년 최종 모금액		15,000	49,242	'23년 일반회계로 관리
'24년 수입액		31,990	105,015	'24년 모금액 예상 증가율은 연평균 7.8% 적용 ('23년 동일)
	'23년 모금액	15,000	49,242	
	'24년 모금예상액	16,170	53,082	
	이자수입	820	2,691	

○ 지출계획 변경내역 : 예치금 73,025천원 증액

6. 검토의견

○ 고향사랑기금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·운용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에 처음 설치된 기금임.

○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총액이 기금 조성 예상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전입금 증액분을 2024년 수입액에 반영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

○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련법령 1부. 끝.

붙 임 **관련법령**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1. 1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83호, 2022. 12. 30., 제정]

제8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)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하며,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

2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

제24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2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3.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기금결산보고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

2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